

의안번호	2218115
의 퇴 인	이강일의원
회 답 일	2026.7.1.
추계번호	26D1921

집단소송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7조(소송지원)	국가는 다수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78조(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)	집단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측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감면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7조(소송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78조(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)	

2. 상세 사유

- 제정안은 국가가 집단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와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됨(안 제77조 및 제78조)
 - 제정안은 다수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, 집단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측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소송비용 지원 및 감면은 대법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지출되는 방식으

로 운영되고 있으며, 제정안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 및 감면이 이루어질 경우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 중 「소송구조 지원」 사업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됨

- 다만, 소송비용 지원 및 감면 여부 및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, 대상 사건의 수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 소요 추계가 곤란함

□ 참고로, 법원은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소송비용(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보수 등)을 납입유예 또는 면제하고 있음

- 대법원은 2026년 소송구조 지원 예산으로 68억 5,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

[표 1] 「소송구조 지원」 사업 예산 편성 현황: 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내역사업	예산
일반소송구조지원	5,108
개인파산회생소송구조지원	1,749
합계	6,857

자료: 대법원

- 또한 2023~2025년 3년간 소송비용 감면액 및 지원액 내역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소송비용 감면액 및 지원액 내역: 2023~2025년

내역		금액		
		2023	2024	2025
합계		5,930	6,857	6,857
1. 일반소송구조		4,611	5,108	5,108
일반수용비	변호사보수	4,144	4,587	4,587
	변호사보수 이외의 소송비용	417	471	471
	소송구조제도운용 등	50	50	50
2.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		1,319	1,749	1,749
일반수용비	변호사비용	410	613	613
	송달료	909	1,136	1,136

자료: 대법원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